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0. 15. 김진천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8. 10. 3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진천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장애인의 이동용 휠체어 등이 고장날 경우 수리·지원을 통해
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
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3) 리센터의 위탁 및 운영·수리 비용 지원(안 제4조)
- 4) 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, 지원절차(안 제6조~제7조)
- 5) 이용편의 제공(안 제7조), 위탁의 취소 등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에 대하여

- ‘지방자치법’ 제22조(조례)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- 한편, ‘장애인 복지법’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제1호에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진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- 또한, ‘장애인 복지법’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에 의하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- 따라서, 이견 조례안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‘지방자치법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이견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유무 : 48개 지자체 제정

- 서울시 25개 구(區)중에는 강남구가 2010.12.31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9개 구(區)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(휠체어8, 보장구1)
- 또한, 지방에는 거창군이 2008.1.14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(휠체어22, 보장구17)

다.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

- 이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 하였으며, 조문의 단어 및 문장 등이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- 또한, 이견 조례안 각 조항의 내용 등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사업추진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다만, 이견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2항에서 “장애인 휠체어 등”를 정의하면서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이 방대한 것을 고려하여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라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 한편,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라. 수리센터의 위탁·운영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

- 이견 조례안 제4조(위탁 및 운영·수리비용 지원)에서 수리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향후 위탁자 선정 및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마.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: 실현 가능함

-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서비스를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·운영하고 있으며, 2018년 본예산 1천만원 추경예산 4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, 2018.10월부터 수리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아울러, 이견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조례임을 고려하여 법령상, 예산상, 행정상 등의 측면에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제정후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바. 검토 종합의견

- 위와 같이 이견 조례안이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·지원할 수 있는 이견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